



보도시점 2025. 4. 10.(목) 12: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엠바고 해제시)

배포 2025. 4. 9.(수) 10:00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더하다

- 주요 5개 업종·업태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상반기 내 개선완료 목표

- ✓ (제조·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진입 허용
- ✓ (서비스업)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 ✓ (수출입·조달) 불가피하게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
공공조달 참여 공인인증(HACCP, KS 등) 사업장 중복 현장심사 면제
- ✓ (창업·인증)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2천만원→5천만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 ✓ (농·어업)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도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에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주요 개선과제(12건)	
제조·건설업	①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으로 비수도권 인력난 완화 *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타 비수도권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②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③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생활·전문서비스업	④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를 통한 복층구조의 효율적 활용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
	⑤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덤프트럭 1종 →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 9종)
수출입·조달기업	⑥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으로 국내 활용 가능
	⑦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면제
창업·인증기업	⑧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2천만원 → 5천만원)
	⑨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로 맞춤형 지원 강화
	⑩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농·어업	⑪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으로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⑫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업 생산성 및 수익 증가 * 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 배치 등 안전대책 보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주요 개선과제 (12건) >

1 제조·건설업

①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고용부

기존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

*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의 5개 권역

→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 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23.10~)되었으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제한하게 되어 지방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력난 가중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권역간 이동 허용

* 권역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 및 시스템 既개정('25.1)

⇒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 기대

현장의 목소리

전남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A대표는 인력난으로 고민에 빠졌다. 그의 공장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타 권역 이동이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가 A대표의 공장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A대표는 주문량 증가에도 공장운영에 걱정이 없다.



②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고용부

기존 고용허가 발급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실적(100점 중 20점)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배정

→ 내국인 취업 선호도가 낮은 지방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가 더욱 필요한데, 내국인 채용실적이 높은 사업장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업계 애로 호소

개선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 삭제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 개선

*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업무처리요령' 개정(~'25.상)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 기대

현장의 목소리

경북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B대표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다 당황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했는데, 내국인 채용실적이 많을수록 외국인근로자 배정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기준 때문이었다.

“내국인 채용실적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해준다니 답답했죠.”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근로자 배정시에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이 삭제되면, B대표도 필요한 만큼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산업부

기존 전기공사기술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 등급별로 시행 가능한 시공관리를 구분

→ 고압공사 증가 및 고령화로 중급기술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24년 1.3만명)하나,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순수 현장경력자는 중급 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전기공사 분야 인력난 심화

* '최근 3년간 현장 기술인력 채용에 어려움 겪었다' 응답 78.6% ('25.1, 전기신문 설문조사)

개선 학위·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25.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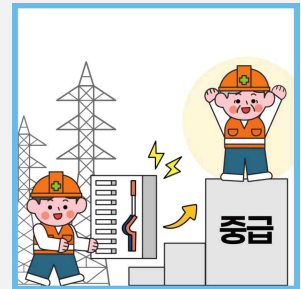
⇒ 현장경험이 풍부한 순수경력자의 중급 취득 허용, 인력 활용 극대화로 현장 인력난 완화

현장의 목소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C사는 고압공사 현장관리를 담당할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 없이는 현장 경력이 충분하더라도 중급 승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경력과 역량을 갖춘 경력자가 초급기술자에 머물러야 한다니 불합리해요."

앞으로 중급기술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초급기술자는 충분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중급 승급의 기회를 얻게 되고, C사는 시공관리책임자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생활·전문서비스업

④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국토부

기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구획을 허용('20~), 이 때 구획된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 성인키에 비해 낮은 높이 기준으로 시설 활용시 애로,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아 상·하층부 1.7m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시공 등 부담 발생

개선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칸막이 공간 구획시 상·하층 높이규제 합리화

*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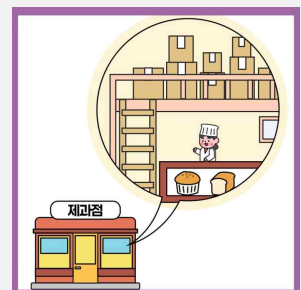
⇒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소상공인('23년 기준 약 22만개소)의 다양한 복층공간 활용(창고, 주방,接客시설 등)으로 임대료 부담완화 및 매출증대 기대

현장의 목소리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D씨는 재료와 용품 보관을 위한 창고임대를 고민했으나, 임대료가 부담됐다. 가게 내부에 칸막이 복층 구조를 시공하려 했으나, 상·하층의 높이가 각각 1.7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층고가 4m인데, 층별 높이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천장을 낮추는 등 추가 시공이 필요하고, 아래층 공간 활용도 제약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데도 1.7m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 규제개선으로 D씨는 별도로 창고를 임대하지 않고도, 칸막이 시공을 통해 1층은 주방으로 2층은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⑥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덤프트럭 1종 → 레미콘, 지게차 등 9종) 행안부

기존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 허용중이며, 건설기계 중에는 덤프트럭만 허용

→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유사하게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레미콘트럭, 굴착기 등은 옥외광고 불가

개선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레미콘, 트럭지게차 등 9종)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 확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25.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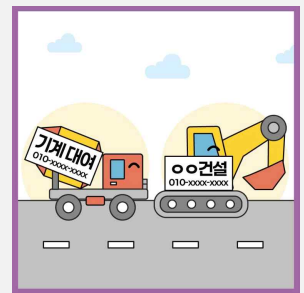
⇒ 건설기계('24년 기준 55만대 중 수해대상 27.5만대) 소유 자영업자의 광고비용 절감 및 홍보기회 확대

현장의 목소리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E씨는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 광고를 위해 차체를 활용한 광고를 하려 했으나, 건설기계 중에서는 덤프트럭만 옥외광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덤프트럭만 되고 유사한 레미콘트럭과 지게차는 왜 안되는 걸까요?"

앞으로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가 확대되면서 E씨가 소유한 레미콘트럭, 지게차에도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수출입·조달기업

⑥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 식약처

기존 식품의 표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 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스티커 부착 가능

→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은 수출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여, 국내 기준을 충족하였어도 활용 못하고 폐기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은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 허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25.상)

⇒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피해 최소화

* '21~'23년 주요 40개 식품수출업체 대상 조사 결과, 7개 업체 제품 폐기 등 손실액 약 64억원

현장의 목소리

중소 식품업체 F사는 일본의 한 회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지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해당 제품은 국내 기준에도 문제가 없도록 제조되었지만, 제품정보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덜컹한 제품을 그대로 버려야 한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이번 개선으로 수출계약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에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이 허용되면서, F사는 불필요한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⑦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 중복 현장심사 면제 중기부

기존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시설·인력·공정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야 해, 공인인증(HACCP, KS 등)을 받은 기업도 현장심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 중복부담 유발

개선 공인인증(HACCP, KS 등 12종) 보유 사업장은 공공조달계약 직접생산 확인시 현장심사 면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既개정('24.11)

⇒ 절차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심사비용(연평균 10억원) 절감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시간 단축(14일→5일)

현장의 목소리

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중소기업 G사는 학교 급식용 유제품 공급을 위해 공공조달계약 참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었다.

“지난번 HACCP 인증 때 현장심사를 받았는데, 유사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니 번거로웠어요.”

이번 규제개선으로 G사는 추가적인 현장심사 없이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창업·인증기업

⑧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회약 한도 상황 행안부

기존 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지방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회약* 가능하여,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개척 한계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회약 허용

개선 청년창업기업과 지방계약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회약 허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5.상)

⇒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 지원

현장의 목소리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는 청년창업기업 H사는 ㄱ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농약 살포용 드론 공급 수의회약에 입찰하려 하였으나, 드론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 장애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청년기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회약 한도가 상향되면서 H사는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 삼을 수 있게 되었다.



⑨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중기부}

기존 창업자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자금력 등 창업여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은 부족

* 전국 246개소 운영중, 5,700여개사 입주('25.2 기준)

개선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 신설

* 창업보육센터(BI)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25.상)

⇒ 청년창업기업의 창업환경 개선으로 조기 안착 지원

현장의 목소리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청년 예비창업자 I씨는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장과 장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수도권의 J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신청했으나, 경쟁률이 높아 탈락했기 때문이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은 창업보육센터 입주도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시 청년창업자 우대조건이 생기는 만큼, I씨는 원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⑩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특허청}

기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은 출원발명에 대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 인력·자금여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 사업화, 해외진출 등 신속한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22~'24년간 신청건수 약 12만건)

개선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 삭제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既개정('25.2)

⇒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우선심사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술 보호 및 신속한 사업화 촉진(심사처리기간을 통상 1~2년에서 최대 2개월 내로 단축)

현장의 목소리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K사는 새롭게 개발한 특허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려 한다. 하지만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선행기술조사가 부담으로 작용되었다.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선행기술조사는 부담이에요.”

이제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이 없어진 만큼, K사는 부담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5 농·어업

11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농식품부

기존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만 영위 가능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협소하여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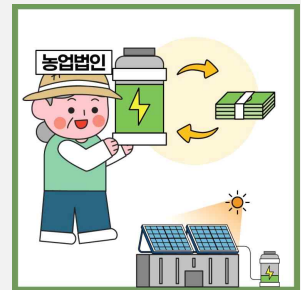
⇒ 농업법인('22년 기준 2.6만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을 활용한 추가수익 창출 기대

현장의 목소리

농업법인 L사는 겨울철 휴경기간 동안 농업용 공장의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판매하고 싶었지만,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농업관련 사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불가능했다.

“아까운 전력을 그대로 폐기해야 한다니 안타까웠어요.”

앞으로는 일정 규모 하에서 농업법인의 태양광 부대사업이 허용되는 만큼 L사는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2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해경청

기존 어선의 월선·피랍 방지 및 안전대책으로 서해 특정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통제 ('89~)함에 따라, 어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

* 서해5도 인근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약 1.2만km²로 여의도 면적의 4천여배

개선 안전대책 보완(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배치 등)을 통해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 전면 해지

* 서해 조업보호협의회(해군-해경-지자체-전문가 등)에서 합의 완료('24.11) → 야간조업 실시('25.3~)

⇒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고 증대(연평균 약 850억원) 및 어업인(수해대상 조업선 약 3.1만척)의 조업편익 증대

현장의 목소리

인천 소청도에 거주하는 어업인 M씨는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1989년부터 이어져 온 서해 특정해역의 야간조업 통제가 해제되기를 늘 기대했다.

“갈치, 오징어는 야간에만 잡을 수 있는데, 야간조업이 막혀있으니 답답했어요.”

이번 개선으로 서해 특정해역의 야간조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M씨와 같은 특정해역 어민들의 조업기회 확대로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



※ 【붙임1】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붙임2】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과제 세부내용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이대섭 (044-200-2430)
		담당자	사무관 정재영 (044-200-2407)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책임자	담당관 박재현 (02-730-2491)
		담당자	전문위원 최재훈 (02-730-2493)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책임자	과장 고현웅 (02-3778-3440)
		담당자	전문위원 이명규 (02-3778-3501)
		책임자	과장 박경덕 (02-3778-3430)
		담당자	전문위원 전대천 (02-3778-3520)
담당 부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책임자	과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044-202-7148)
담당 부서 <전기공사 기술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서기관 장원 (044-203-3895)
담당 부서 <휴게음식점 상·하칸막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장 문석준 (044-201-3755)
		담당자	사무관 허재성 (044-201-3760)
담당 부서 <건설기계 옥외광고>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책임자	과장 박희건 (044-205-3551)
		담당자	사무관 이상욱 (044-205-3544)
담당 부서 <수출식품 한글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호동 (043-719-2191)
		담당자	사무관 박진아 (043-719-2188)
담당 부서 <공공조달 직접생산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현동 (044-204-7540)
		담당자	사무관 현수찬 (044-204-7498)
담당 부서 <청년창업기업 지방계약>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책임자	과장 서상우 (044-205-3771)
		담당자	사무관 홍성권 (044-205-3783)
담당 부서 <창업보육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장 김성훈 (044-204-7660)
		담당자	사무관 김마성 (044-204-7664)
담당 부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특허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장 신준호 (042-481-8321)
		담당자	사무관 한지성 (042-481-5397)
담당 부서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책임자	팀장 조민경 (044-201-1531)
		담당자	서기관 김승동 (044-201-1537)
담당 부서 <서해특정해역>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책임자	과장 김주언 (032-835-2041)
		담당자	경감 배병진 (032-835-2243)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60건 마련

1 제조·건설업

✓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권역간 이동 불가

→ 개선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간 이동



✓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개선

내국인 채용실적이 높은 사업장부터 우선 배정

→ 개선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 삭제



✓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진입요건 완화

관련 자격증 학위 필요

→ 개선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진입 허용



2 생활·전문서비스업

✓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상·하층 각각 1.7m 이하로 제한

→ 개선 창고, 주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25년 7월 개선 예정

✓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건설기계 확대

덤프트럭만 가능

→ 개선 레미콘트럭, 굴착기 등 9종으로 확대



25년 상반기 개선 예정

3 수출입·조달기업

✓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

수출 계약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어 국내 활용 곤란

→ 개선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으로 가공·조리용, 급식용 등 국내 활용 가능



25년 상반기 개선 예정

✓ 공인인증(HACCP 등)을 보유한 사업장이 공공조달 참여 시, 중복 현장심사 면제

공인인증을 취득할 때 거쳤던 현장심사를 공공조달 참여 시에도 중복으로 실시

→ 개선 중복된 현장심사 면제



개선 완료

4 창업·인증기업

✓ 지자체 등과 지방 계약 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상향

2천만 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계약 가능

→ 개선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25년 상반기 개선 예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청년창업자 우대

청년창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 부족

→ 개선 입주 심사 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 신설



25년 상반기 개선 예정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필요

→ 개선 제출 의무요건 삭제



개선 완료

5 농·어업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농업법인은 농업 관련 부대사업만 가능

→ 개선 농업용 공장·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 전력 거래 허용



25년 7월 개선 예정

✓ 서해 특정해역의 야간조업 허용

서해 특정해역은 야간조업 불가

→ 개선 안전대책 보완 후 야간조업 허용



개선 완료

□ 추진배경

-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가중
 - *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 전년동월 대비('24.481.0 → '25.475.7) 하락('25.3, 중기중앙회)
 - ** 국내 규제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 응답 중소기업 43.7%('24.11, 중소기업진흥공단)
 - 재정·세제 등 정책지원과 함께, 규제혁신을 통한 시너지 제고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
 - ※ 민생규제 中 '국민불편 분야 규제개선 방안' 既발표('25.1.22, 현안관계장관회의)
-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건의 수렴 →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60건 확정

□ 추진방향

목표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편·부담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추진 방향	◇ 업종·업태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 상반기 내 완료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체감효과 극대화
분야 및 주요과제 (12건)	
제조·건설업 (13건)	▶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생활·전문서비스업 (12건)	▶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덤프트럭 1종 →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 9종)
수출입·조달기업 (7건)	▶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 중복 현장심사 면제
창업·인증기업 (16건)	▶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2천만원 → 5천만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농·어업 (12건)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 추진과제 (60건)

1

제조 · 건설업 분야 (13건)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고용부)	기존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21) 5.2만 → ('23) 12만 → ('25) 13만 **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의 5개 권역 →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 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23.10~)되었으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제한하게 되어 지방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력난 가중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비수도권 권역간 이동 허용 * 권역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 및 시스템 既개정('25.1) ⇒ 비수도권 지역 중소사업장의 인력난 완화 기대	선제조치 ('25.1)
2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고용부)	기존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100점 중 20점)을 포함한 고용허가 요건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부터 순차 배정 → 내국인 취업 선호도가 낮은 지방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가 더욱 필요한데, 내국인 채용실적이 높은 사업장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업계 애로 호소 개선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 삭제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 개선 * 현장 의견수렴(~'25.5) 후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업무처리 요령' 개정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 기대	'25.상
3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산업부)	기존 전기공사기술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 등급별로 시행 가능한 시공관리를 구분* * ▲특급·고급 : 모든 전기공사 ▲중급 : 태양광 발전설비, 고압공사 현장관리 ▲초급 : 소형건축물, 배선공사 등 사용전압 1,000볼트 이하 전기공사 → 고압공사 증가 및 고령화로 중급기술자 공급이 부족('24년 1.3만명)하나,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순수 현장경력자는 중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인력난 심화 * '최근 3년간 현장 기술인력 채용에 어려움 겪었다' 응답 78.6% ('25.1, 전기신문 설문조사) ※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등은 순수경력자 중급 진입 허용중 개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순수 현장경력 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 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2.10~3.24) ⇒ 현장경험이 풍부한 순수경력자의 중급 취득 허용, 인력 활용 극대화로 현장 인력난 완화* * 순수 현장경력자 중급 진입시 '29년 공급부족 해소 전망	'25.상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4	식품제조·가공업 인증 작업장에서 단순수산물 생산 허용 (식약처)	[기존] 식품위생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으로 구분) 필요 →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에서 단순수산물(자연산물)을 생산하려면 분리된 별도의 작업장을 갖춰야 하는 부담 * 예) '진공포장 굴비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단순 수산물로 제조한 '굴비 역걸이 상품'은 제조 불가 [개선]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에서 ①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공간을 설정하고, ②청소계획 수립 등 조건 준수시 단순수산물 생산 허용 * 식품안전관리지침 既개정('25.1) ⇒ 식품업체의 상품 다변화 및 영업이익 증대	선제조치 ('25.1)
5	간편조리세트의 식품 영양표시방법 개선 (식약처)	[기존] 일부 가공식품(182개)에만 적용중인 영양표시* 대상이 간편조리세트 등(259개)으로 확대 예정('26.1~) * 영양성분 표시와 실제 분석 데이터가 20% 이상 차이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연산물이 포함된 간편조리세트(밀키트)는 산지·부위·시기 등에 따라 영양성분 변동성이 커 일정한 영양성분 표시가 곤란 [개선] 간편조리세트 특성을 반영한 영양표시 방안 마련 (자연산물과 가공식품 구분, 자연산물은 식품영양성분 DB 제공값 적용 등) *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개정 ⇒ 자연산물 포함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합리화 및 사업자 부담 경감 * (참고) 간편조리세트 생산업체 560여개소, 제품 6,500여개('25.1월 기준)	'25.상
6	건설기계 대여업 변경신고 기준 완화 (국토부)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은 보유대수에 따라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과 '개별' 건설기계대여업(4대 이하)로 구분되며, 보유대수 등 사정변경시 변경신고 필요 * 변경신고 미실시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시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 매입·판매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유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180일 이내)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건설기계대여업자('24년 기준 1.3만여명)의 불필요한 신고 의무 완화	'25.상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7	건설업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 인정범위 확대 (국토부)	[기존] 건설업 등록·유지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대상이 됨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주는 서류 → 일부 조건은 일시적 미달시 행정처분 적용 예외*로 인정되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관련 예외규정은 없어 사업 양도·양수시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 발생 * 예)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육아휴직 등으로 등록기준 미달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구비로 '24년 406건의 영업정지 처분 [개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일정기간(양도신고 수리일로부터 50일까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추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로 전문건설업체('24년 약 8.1만개)의 영업환경 개선	'25.상
8	전문건설업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서류 명확화 (국토부)	[기존] 전문건설업은 업종(14개)과 주력분야(27개)로 구성되며, 업종·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관청에 신청 필요 → 주력분야간에는 자본금 요건이 동일하여 주력분야 추가등록시 자본금 재입증이 불필요하나, 등록관청에서 자본금 관련 서류 제출 요구가 빈번하여 건설업체 불편 초래 * 현행 법령상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에도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규정 [개선] 등록기준 중 변동이 있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 완화로 주력분야 추가 등록 편의 제고 * (참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등록건수 1.2만건('24년 기준)	'25.상
9	소규모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절차 간소화 (국토부)	[기존] 하천·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후에 지정된 예정지 내에서 채취 허가가 이루어져야 함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관계기관(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협의로 일정 기간 소요되고, 이후 골재채취 허가 등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골재 적기 공급이 곤란 [개선] 일정규모 미만(골재채취구역 면적 25만㎡ 미만 등)의 하천·홍수관리구역에 한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절차 생략 * 골재채취법 개정 ⇒ 골재 적기 공급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신속한 골재채취 허가 가능(약 1~2달 단축)	'25.상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0	친환경 선박신조 지원사업 중소선사 가점 강화 (해수부)	기존 높은 선가로 친환경선박 신조가 부담스러운 외항선사*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신조 시 최대 10%까지 선가를 보조** * '24년 선사 현황 : 대기업 3개사, 중견 41개사, 중소 84개사 ** 지원실적 : ('23) 12척 130억원, ('24) 15척 226억원, ('25 예산) 230억원 → 지원사업이 기술·전문인력 등을 갖춘 대형선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수혜대상이 대기업에 집중*, 중소선사의 사업참여 곤란 * ('23) 대기업 3개사 선정, ('24) 대기업 1개사, 중견 2개사 선정 개선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중소선사에 대한 가점 강화(7→10점), 중소선사 대상 선가보조를 우대근거 마련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 사업지침 既개정('25.1) ⇒ 중소선사의 경영부담 완화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력 확보	선제조치 ('25.1)
11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의제 항목 확대 (고용부)	기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변동·소멸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중 성립신고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한 신고의제 적용 중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착공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등 9가지 항목 → 행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해 신고의제 항목 추가 관련 현장요청 빈번 * 보험 미가입(지연신고)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은 98% ('21~'23 연평균 약 15.7만개소 중 약 15.5만개소) 개선 보험관계 성립·변동·소멸 신고의제 항목 확대 (▲성립 9종 → 성립 13종 ▲변동 1종 ▲소멸 2종 등 17종)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既개정('25.1) ⇒ 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신고편의 제고	선제조치 ('25.1)
12	화약류 운반시 경계요원 탑승의무 현실화 (경찰청)	기존 도심권 지하공사, 석산발파, 건설공사 등을 위한 화약류 운반시 사고·피탈 방지를 위해 2곳 이상 장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경계요원 등 탑승*을 의무화('62~) * 화약류 운반 시 운전기사 + 운반책임자 + 경계요원 탑승 필요 → 트럭 등 소규모 차량의 경우 운전자·운반책임자·경계요원 3명이 탑승하기 어렵고, 경계요원 노령화 등으로 인력 수급도 어려운 상황 개선 피탈 방지 조건(배형화물차·GPS부착·도난방지시스템 등) 구비시 운반책임자가 경계요원을 겸할 수 있도록 개선 *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개정 ⇒ 건설업계 등 화약류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어려움 해소 * (참고) 화약류 수송운반 신고건수 약 56,000건('24년 기준)	'25.7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3	비료(상토) 원료로 고로슬래그 허용 (농진청)	[기존] 법령에서 정한 비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아니거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비료 생산·공급시 처벌 → 용광로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는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함에도 원예작물 비료(상토) 제조 원료로 사용 불가 [개선] 비료(상토)의 사용가능 원료로 고로슬래그 추가 *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개정 ⇒ 재활용 확대로 원자재 수입 대체 및 비료의 가격경쟁력 개선	'25.상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국토부)	기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구획을 허용*('20~), 이 때 구획된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 칸막이 분리·해체 가능, 구조안전 확인 등의 조건충족 필요 → 성인키에 비해 낮은 높이 기준으로 시설 활용시 애로,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아 상·하층부 1.7m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시공 등 부담 발생 개선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칸막이 공간 구획시 상·하층 높이규제 합리화 (예: 하층부 높이제한 폐지, 상·하층부 높이제한 완화 등) *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복층공간 활용(창고, 주방, 접객시설 등)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매출증대 기대 * (참고)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약 22만개소('23년 기준)	'25.7
2	건설기계(레미콘 등) 옥외광고 허용 확대 (행안부)	기존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를 허용중이며, 건설기계 중에는 덤프트럭만 허용 * 교통수단 옥외광고 허가·신고건수 10,146건 ('23년 기준) →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유사하게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레미콘트럭, 굴착기 등은 옥외광고 불가 개선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 9종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 확대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영업자의 광고비용 절감 및 홍보기회 확대 * 건설기계 총 55.6만대 중 수혜대상 27.5만대('24년 기준)	'25.상
3	응급환자 이송업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 (복지부)	기존 응급환자 이송업을 위해서는 66m² 이상의 사무실 면적 필요 → 사업장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시설요건으로 경영부담 야기 개선 응급환자 이송업 사무실 면적요건 삭제 *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既개정('25.3) ⇒ 사업장 운영상황에 적합한 사무실 운영으로 경영부담 완화	선제조치 ('25.3)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4	호텔업 평가기준 통합 등 등급평가제도 개선 (문체부)	[기존] 호텔등급평가는 등급(성급)별로 요구되는 평가기준(서비스, 시설, 안전관리 등)에 부합하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 미달시 재평가를 실시 → ①등급별로 평가기준이 달라 점수미달로 희망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등급결정 재신청 필요, ②일부 평가항목의 구체성이 떨어져 객관적 평가 곤란 [개선] ①등급간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1회 신청으로 등급결정 가능 ②평가기준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요구 반영 (예: 방음관련 데시벨 기준 등 평가기준 제시, 위생안전지표 강화 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 개정 ⇒ 호텔업 사업자 편의성 및 평가 실효성 제고	'25.상
5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대상물의 층수 표시·광고 기준 완화 (국토부)	[기존]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지번·동·층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는 저/중/고로 표시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할 수 없음에도, 중개업 현장에서는 의뢰인 요청에 따른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혼란 * 층수 표시 기준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 준주택(오피스텔)도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既개정('24.12) ⇒ 부동산중개업 현장의 혼선 방지 및 고충 해결	선제조치 (‘24.12)
6	교통유발부담금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연장 (국토부)	[기존] 매매 등으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 소유자와 소유기간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고, 미신청 시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모두 납부해야 함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건축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전년 8월 ~ 해당년 7월까지 1년분) → 부과지령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기간을 놓치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었던 시기의 교통유발부담금도 납부 [개선]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연장(10일 → 30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 기간 확대로 납부자의 부담 완화 * (참고) '21~'23년간 연 평균 부과 건수 32만건, 부과금액 5,150억원	'25.상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7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강의실 면적요건 폐지 (산림청)	[기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66㎡ 이상 강의실 필요 → 사업장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시설요건으로 경영부담 야기 [개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강의실 면적요건 폐지 (66㎡ 이상 →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 * 목재이용법 시행령 既개정('25.3) ⇒ 교육인원에 적합한 강의실 활용으로 부담완화	선제조치 (‘25.3)
8	바다해설사 자격취득 교육시간 완화 (해수부)	[기존] 바다해설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교육 60시간 이수 필요 → 어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 확대가 필요하나, 과도한 교육시간으로 양성 지연 [개선] 전문교육 필수 이수 시간 완화(60시간 → 53시간)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既개정('25.3) ⇒ 바다 해설사 양성 확대 및 어촌 활성화	선제조치 (‘25.3)
9	바다해설사 교육기관 인력요건 완화 (해수부)	[기존] 바다해설사 양성 교육기관은 ①5년 이상 교육업무 경력이 있는 운영인력 및 ②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강사인력 필요 → 어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 확대가 필요하나, 엄격한 교육기관 인력요건으로 양성 지연 [개선] 바다해설사 교육기관 인력요건 완화 (운영인력 경력요건 삭제, 강사인력 실무경험 10년 이상 → 5년 이상) *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바다해설사 양성 확대 및 어촌 활성화	'25.상
10	항만운송사업 전산화로 비대면 민원 신청기능 도입 및 업무 효율화 (해수부)	[기존] 항만운송사업 등록·변경 등의 관련 업무를 수기작성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중 → 신속한 업무처리 곤란으로 사업자 등 민원인 불편 증대 [개선]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민원신청 및 데이터·통계 통합관리 지원 등 대민서비스 개선 * 항만운송사업등록 전산화시스템 개선 ⇒ 항만운송사업 관련 민원인*의 불편경감 및 업무효율화 * (참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업체 6,321개('24년 기준)	'25.7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1	위생용품 영업 변경신고 신청기한 명확화 (식약처)	[기존] 위생용품 영업* 관련, 영업자 성명, 영업장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 필요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 유사법령*과 달리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 즉시'로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의 업무상 혼란 및 행정관청의 처분기준 모호 * 예) 식품위생법은 변경 발생 후 7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 [개선] 위생용품 영업 변경신고 신청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25.1.3~2.12) ⇒ 영업자의 업무상 혼란 방지 및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25.상
12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완화 (문체부)	[기존] 지역신문사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 필요 * 지역신문사 연 70개 내외 대상, 기획·취재 등 역량지원 및 소외계층구독료 등 지역공헌 사업 관련 '25년 83억원 지원 →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이 중단('21.7~)되었음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한국ABC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 지역신문사 부담 발생 * 지역신문은 발행부수에 따라 연 58만원 ~ 440만원(입회비 별도) [개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요건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삭제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既개정('25.1) ⇒ 지역신문사의 재정적 부담 완화	선제조치 ('25.1)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 (식약처)	기존 식품의 표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스티커 부착 가능 *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등 →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은 수출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여, 국내 기준을 충족하였어도 제품을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경우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표시 허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행정예고 : '24.12 ~ '25.2) ⇒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피해 최소화 * (참고) 주요 40개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7개 업체 제품 폐기 등 손실액 약 64억원('21~'23년, 출처:한국식품산업협회)	'25.상
2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 (HACCP, KS 등) 중복 현장심사 면제 (중기부)	기존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시설·인력·공정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야 함 → 유사형태의 공인인증(HACCP, KS 등)을 받은 기업도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 중복부담* 유발 * 예) 소시지, 빵 등 일부 식품은 직접생산 확인보다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치는 HACCP(해썹)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재차 받아야 함 개선 공인인증(12종) 보유 사업장은 공공조달계약 직접생산 확인시 현장심사 면제 (KS인증, HACCP인증, 소방장비인증, 국내산원산지증명, 전기용품안전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 GMP인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既개정('24.11) ⇒ 절차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심사 비용(연평균 10억*) 절감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시간 단축(14일→5일) * 수수료·인건비 절감액(건당 26만원) x 연평균 공인인증(3,772건)	선제조치 (24.11)
3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중기부)	기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신청시 기본요건, 경영실적 증빙 등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필요 *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온라인 수출플랫폼 등 5개 사업 → 다수의 지원사업 신청시 사업별로 5종 내외의 공통서류*를 각 기관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등 불편 *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24) 등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출지원사업 신청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既개선('24.12) ⇒ 연평균 약 10만건*의 서류발급 생략으로 지원사업 신청 편의 개선 * 최근 3년 평균 신청기업수 19,538개사 x 서류 5종 = 97,690건	선제조치 (24.12)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4	중소 기상기업 수출지원 기준 완화 (기상청)	기존 중소 기상기업의 수출 저변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홍보, 해외 특허 획득 등 맞춤형 해외수출 지원 중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25년 2억 2천만원 지원) → 지원기업의 수출규모(3년 평균수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 중이나, 기준이 높아 수출실적이 낮은 기업은 대상 선정 어려움 * ▲수출초보(~10만불) : 최대 2천만원 ▲수출유망(10~100만불) : 최대 3천만원 ▲수출성장(100만불~) : 최대 5천만원 지원 ('24년 기준) 개선 수출실적 기준을 50% 완화(수출초보 10→5만불 미만 등)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既개정('25.2)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참고) 기상산업 부문 수출액 : ('20) 148억 → ('23) 237억	선제조치 (‘25.2)
5	외국환거래 검사절차 간소화 및 정보제공 근거 마련 (관세청)	기존 세관장은 외국환거래 검사 대상자에게 '자율점검표' 표준서식을 송부하고, 검사 준비자료의 제출을 요청 → 세관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도 점검대상에 포함되나 검사대상자에게 자료제공이 불가하여, 업체 미보유 자료는 관세사 또는 해외거래처를 통해 준비하는 등 검사 부담 개선 검사에 필요한 자료만 준비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허용, 검사대상자에게 세관보유 자료 제공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既개정('24.10) ⇒ 수출입업체*의 자료준비기간 단축(15→7일) 등 검사 부담 완화 * 연간 1천만불 이상 외국환거래 실시업체 약 8,500개('23년 기준)	선제조치 (‘24.10)
6	수입영업자 영업등록 변경사항의 수수료 규정 합리적 개선 (식약처)	기존 수입영업자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소재지 변경 시 영업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 * 예)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주소 세분화 등 → 수입영업자의 책임이 없는 행정구역, 지번 변경시에도 수수료(5,300원) 납부 의무 발생 개선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 개정으로 영업자 부담 경감	'25.상
7	수입물품의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 (관세청)	기존 사후관리 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 * 수입통관 단계에서 통관 이후 정해진 사용처(예: 사료용도 등)에 사용시,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받으면 사후관리가 면제되더라도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신고 수리 ~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까지 사후관리(약 14일) 필요하여 수입업체 부담 개선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을 수입신고 전에 가능토록 개선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연간 600여건)되어 업체 부담 경감	'25.상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익계약 한도 상향 (행안부)	[기존] 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지방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익계약* 가능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익계약 허용 → 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한 공공조달 등 판로 확대* 필요 * 국가계약은 5천만원 이하까지 청년창업기업과의 수익계약 허용 [개선] 청년창업기업과 지방계약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익계약 허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 지원 * (참고) '24년 기준 5천만원 이하 지방수익계약 약 5.5만건(1조 4975억원)	'25.상
2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 (중기부)	[기존] 창업자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등 지원으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중 * 전국 246개소 운영중, 5,700여 기업 입주('25.2 기준) → 자금력 등 창업여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 [개선]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 신설 * 창업보육센터(BI)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 청년창업기업의 창업환경 개선으로 조기 안착 지원	'25.상
3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특허청)	[기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은 출원발명에 대한 선행기술 검색방법 및 결과(문헌4개 이상)를 제출하는 자체 선행기술조사가 필수 * 사업화, 해외진출 등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 ('22~'24년간 신청건수 약 12만건) → 특허 전문가 등 인력, 자금여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선행기술조사가 부담으로 작용 [개선]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 삭제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既개정('25.2) ⇒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우선심사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술 보호 및 신속한 사업화 촉진 (심사처리기간을 통상 1~2년에서 최대 2개월 내로 단축)	선제조치 ('25.2)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4	중소·중견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수수료 감면 (국토부)	기존 물류창고 현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운영중('21.7~)으로, 기업규모 및 인증등급에 따라 보조금·융자 혜택 등 부여 *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 → 스마트물류센터 신규 인증신청 시 수수료(예비인증 300만원, 본인증 300만원)를 부과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개선 중소기업은 인증수수료 전액 감면, 중견기업은 50% 감면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24.11~'25.1) ⇒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물류 전환 유도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참고) '24년 기준 전국 53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중소·중견기업 31개)	'25.4
5	재창업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중기부)	기존 중소기업이 폐업한 이후 동종업종으로 3년(부도·파산시 2년) 이내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사업 참여 불가능 → 폐업 후 이전 사업과는 차별화된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을 활용하여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창업기업 지원사업 수혜불가로 재기에 한계 * 재창업기업 중 동종업종 비중 54.4% 개선 동종업종이어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 창업으로 인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또는 신기술 적용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既개정('25.3) ⇒ 실패경험의 자산화 및 재기 지원을 통해 선순환 창업생태 조성	선제조치 ('25.3)
6	청년창업기업 대상 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국조실)	기존 '先허용-後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중('19.1~)으로, 샌드박스 신청시 소관부처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 규제여부 신속확인(30일 內) → 규제대상은 심사 후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참여 확대 지원 필요 개선 ①청년창업기업 대상 우선심사(90일→60일) 지원, ②분야별 청년창업기업 전담관 지정으로 규제샌드박스 전과정(심의·실증·제도개선) 밀착 관리 * 심의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맞춤형 규제샌드박스 지원으로 청년창업기업의 신속한 사업개시 촉진	'25.상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7	창업자에 대한 창업기획자의 연대책임금지 규정 신설 (중기부)	기존 창업기획자(AC)*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 부재 * ▲(의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교육 및 투자를 통한 성장 가속화 ▲(대상) 초기창업기업에 총 투자금액의 40% 이상 투자 필요 → 벤처투자회사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창업기획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창업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벤처투자회사조합은 기업대표, 주주 등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중 ** 창업자 대상 AC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정응답 70.2%(25.2, 뉴시스) 개선 창업자에 대한 창업기획자의 연대책임 부과 금지규정 신설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 창업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25.상
8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출자한도 확대 (중기부)	기존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위주 출자자로 결성되어 조합결성 규모가 작고, 조합별 투자 건수도 제한적 *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인투자조합의 포트폴리오 투자(5건 이상 투자)가 불가능하고 투자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 개선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지방에 중점투자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상향(30→40%) *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 ⇒ 개인투자조합 내 법인참여 확대로 규모 있는 조합의 결성 및 운영이 가능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	'25.7월
9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 (중기부)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공실 등 여유공간이 있더라도 창업기업 입주기간*은 최대 8년으로 제한 * 기본 3년, 연장 2년, 추가연장 3년 → 중소기업이 충분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보육여건 제공이 필요, 특히 공정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R&D 업종 등의 입주기간 연장 요청 * 법인 설립 ~ 중소기업 졸업까지 평균 15년 소요(23.1, 대한상의) 개선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확대(최대 8년→20년, 창업기업이 센터의 50% 이상 입주한 경우의 잔여면적 대상) *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 既개정(25.2) ⇒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특성에 맞는 보육여건 제공으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여건 마련	선제조치 (25.2)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0	비수도권 여성창업 보육센터의 입주기간 연장 (중기부)	기존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예비)창업기업에 여성창업 보육센터* 공간을 제공(최대 5년)하여 사업화 지원중 * 전국 18개 센터, 238개실 운영중('24년 기준) → 수도권 대비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육성 촉진방안 마련 필요 개선 비수도권 여성창업 보육센터 입주기간 확대(최대 5년→8년)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비운영 및 관리요령 既개정('24.12) ⇒ 비수도권 지역의 여성 창업환경 개선	선제조치 (‘24.12)
11	창업경진대회 제출서류 간소화 (중기부)	기존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참여를 위해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실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 → 예선단계에서 불필요한 실적 증빙자료를 신청시점에 함께 요구하여 참가자의 서류부담 가중 개선 실적 증빙자료는 예선통과한 기업만 제출토록 간소화 * 2025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사업공고 既반영('25.4) ⇒ 창업경진대회 참여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선제조치 (‘25.4)
12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범위를 신규 외 '갱신' 까지 확대 (중기부)	기존 ISO(국제표준인증), 녹색인증 등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신규인증 취득 지원중 * 5년동안 바우처 지원 3회 가능, 최근 3년('22~'24)간 400여건 지원 → 인증갱신(유효기간 3년)시 신규인증에 준하는 절차, 비용*이 수반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부담 개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범위를 인증갱신까지 확대 *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공고상 세부지원내용 既반영('24.11) ⇒ 신규인증에 준하는 인증 갱신시 컨설팅 및 인증심사비 패키지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경쟁력 제고	선제조치 (‘24.11)
13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대상 확대 (중기부)	기존 연구인력 채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동일·유사 사업으로 既지원받은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불가 → 종전 지원 당시보다 상향된 학위(석사→박사 등)를 취득한 인력에 대해서도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곤란 개선 기존에 지원받은 연구인력이 상향된 학위를 취득하여 타 중소기업에 채용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既반영('25.1) ⇒ 지원범위 확대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선제조치 (‘25.1)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4	소방용품 인증시 보완횟수 확대 (소방청)	기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시 기준에 미달하는 보완필요사항은 최대 2회(회당 60일 이내)까지 보완 가능 → 보완횟수 제한에 대한 부담으로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 단순 개선 또는 저가의 해외제품 납품 증가 추세 개선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2회→5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既개정('24.11) ⇒ 개발업체의 인증부담 완화 및 소방용품 품질향상 촉진 * (참고) '21~'23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접수건수 연평균 약 1,050건	선제조치 ('24.11)
15	선외기 설치 소형선 검사부담 완화 (해수부)	기존 선박의 경우 해수유입이나 축계변형 여부 확인을 위해 매 2.5년마다 선외기, 프로펠러 등 발출검사 수행 → 획일적인 검사준비(선외기 발출)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개방·발출검사시 3일 소요, 1회당 검사비용 약 1,300만원 발생 개선 선외기는 단일 조립 완성품으로 미사용시 부식예방이 가능한 바, 정비·작동·운전상태가 양호한 소형선은 검사준비(선외기 발출) 면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0톤 미만 소형선박(여객선 제외) 운영자의 과도한 검사부담 경감 * 유/도선, 플레저보트, 예인선 등 일반선박 약 240척 수혜 예상	'25.7
16	선박용 소형 전력변환장치 (5kw 이하) 형식승인 제외 (해수부)	기존 선박에 설치하는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형식승인* 필요 * 15개 항목 27종의 시험 요구, 평균 기간 2~3개월 및 시험비용 5,000만원 이상 소요 → 전력변환장치의 용량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형식승인 실시로 선박소유주의 시간·비용 부담 개선 선박용 소형(5kw 이하) 전력변환장치는 형식승인에서 제외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既개정('24.12) ⇒ 형식승인 부담 완화로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 발전에 기여	선제조치 ('24.12)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농식품부)	기존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만 영위 가능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협소하여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 농업법인('22 기준 2.6만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을 활용한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예) 육상태양광 300kw 기준 연평균 2,500만원 영업이익 기대	'25.7
2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해경청)	기존 어선의 월선·피랍 방지 및 안전대책으로 서해 특정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통제('89~, 선박안전조업규칙) * 서해5도 인근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약 1.2만km²로 여의도 면적의 4천여배) → 어선안전조업법 제정('20.8)시 야간조업 통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안전상 우려 등으로 야간조업 통제가 지속되어 어민의 권익 제한 * 서해 조업보호협의회('21.2)에서 어선의 월선·피랍 방지를 위해 기존 야간 조업통제 대책을 유지하기로 의결 개선 안전대책 보완(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배치 등)을 통해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 전면 해지 * 서해 조업보호협의회(해군-해경-지자체-전문가 등)에서 합의 완료('24.11) → 야간조업 실시('25.3~) ⇒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고 증대(연평균 약 850억원) 및 어업인(수혜대상 조업선 약 3.1만척)의 조업편익 증대	선제조치 (25.3)
3	과수화상병 매몰지 재식재 금지기간 단축 (농진청)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해 매몰지에는 24개월간 과수나무 재식재가 금지**되어 농가피해 확대 * 사과, 배 등에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증상 악화시 과수 전체 고사 ** 최근 3년간('22~'24)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641호, 피해규모 307ha → 장기간 재식재 금지에 따른 농가소득 위축 개선 화상병균에 대한 토양 잔재물 연구결과(국립농업과학원)를 토대로 재식재 금지기간 단축(24개월→18개월) *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既개정('24.12) ⇒ 과수농가(사과·배 재배농가 약 6만호) 피해 최소화 및 생산 증가 * 금지기간 6개월 축소로 재식재 기간 최대 1년 단축효과	선제조치 (24.12)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4	벌꿀 등 식품 대상 '천연' 표시 허용 (식약처)	[기존] 벌꿀 등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시·광고는 허용되나, '천연'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불가 → 사양벌꿀과의 차별화를 위해 '천연벌꿀'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어 '천연' 표시·광고 허용요청 빈발 *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시킨 벌꿀 [개선] 자연상태로 채집한 벌꿀 등 식품에 '천연' 표시가 가능토록 개선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개정 ⇒ 양봉업계('23년 기준 농가수 2.7만호) 등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증가	'25.상
5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농식품부)	[기존]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정보' 등록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최근 스마트팜 활성화로 농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공간을 활용한 농업이 증가중이나, 관련기준 미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규정 既제정('24.10)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선제조치 ('24.10)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농식품부)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18~'24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17,600명 →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既개정('24.12)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선제조치 ('24.12)
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농식품부)	[기존]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年 5,400억, 1천명(세대당 최대 5억원, 年1.5%) →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하여 사업추진 곤란 [개선]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既개정('24.12)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선제조치 ('24.12)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8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농식품부)	기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연대보증서,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농지은행이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수탁받아 농업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수탁기간 5~10년, 한국농어촌공사 운영) → 사회적 폐해로 지적된 연대보증제도 운영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현장의견이 빈번하고,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여 불편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및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既개선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선제조치 (‘25.1)
9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농식품부)	기존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既개정('24.12)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원) 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명)의 선택폭 확대	선제조치 (‘24.12)
10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 (해수부)	기존 일부 해상(공유수면)에서는 환경에 따른 생산·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병행·겸업 중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는 5개 업종*으로 운영되어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밭줄식, 말목식, 뗏목식 개선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생산할 수 있도록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既개정('25.1) ⇒ 수산종자생산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 확대 * 수산종자생산업 업체수 3.1천개, 생산량 1.4천톤('23년 기준)	선제조치 (‘25.1)
11	수산업 융자금 지원대상자 사망시 회수 유예기간 부여 (해수부)	기존 수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 * 어업경영자금 등 융자금 4.1조원 공급 예정('25년 기준) → 상속인의 즉시 상환에 대한 금융부담 가중 및 불분명한 융자금 회수기한으로 대출취급기관 혼란 발생 개선 융자금 지원받은 자의 사망시 회수 유예기간(3개월) 부여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엄격한 융자금 회수기간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금융부담 경감	'25.상

연번	과제명(부처)	주요 내용	기한
12	수산물 위판장 개설자의 자료 의무보관기간 단축 (해수부)	기존 위판장 개설자*가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품목, 수량 등 관련 자료를 매수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 → 자료 보관기간이 과도하여 위판장개설자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위판장 개설자의 자료 의무보관기간 단축(3년 → 2년) *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 ⇒ 위판장개설자의 영업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화 도모	'25.상